

KREI 농정연구속보 / 2003-4(제4권)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증상기 대응방향

박성재 연구위원, 황의식 부연구위원

(전화 : 3299-4238 / E-mail : seongjae@krei.re.kr, 전화 : 3299-4234 / E-mail : eshwang@krei.re.kr)

1. 문제 제기	/ 1
2. 농가부채 현황과 문제	/ 2
3. 기존 농가부채대책의 한계	/ 4
4. 증상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연구결과물 중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간결하게 정리, 정책 담당자나 농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KREI 농정연구속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1. 문제 제기

농가부채문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농정의 핵심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가부채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저리자금 대체 등을 주 내용으로 해왔다. 고액 금융자산이나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농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가진 대부분의 농가에게 같은 대책을 지원했다. 부채가 있다는 사실이 지원 기준이 되어버린 셈이다. 물론 이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별 농가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한 자료가 없어 문제가 있는 농가를 선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농가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소득보조적 성격의 대책이고, 부채 있는 농가만을 지원하는 불공평한 정책이요 불완전한 대책이었다. 농민단체 등은 ‘언 밭에 오줌 누기 식’으로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하여 효과가 미흡한 대책으로 비판하고, 비농업부문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끌려 다니는 무소신의 정책으로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부채대책은 사회적 압력을 받아야 추진되고 일단 연체상태에 있으면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농가에게는 사후약방문격이라는 점이다.

근본적인 부채문제 해결은 소득 중대에서 찾아야 한다. 금융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법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대상이 한정적이어야 한다. 부채는 소득중대의 수단이자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부채대책은 모든 농가의 부채를 없애는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 요인으로 경영이 위태로운 농가의 조기회생을 지원 하는 대책이다. 이러한 농가를 적기에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는 상시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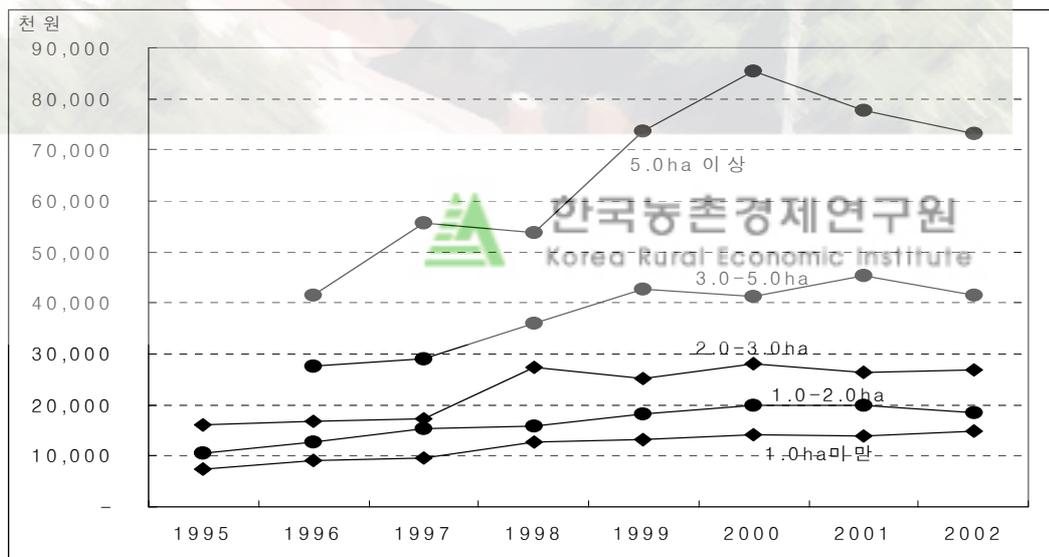
2. 농가부채 현황과 문제

2.1. 농가부채 동향

2002년 말 농가부채는 호당 19,898천 원으로 전년 말보다 2.3% 감소하였다. 농가부채가 감소하기는 31년 만에 처음이다. 그 내용을 보면, 생산성 부채가 1.7% 감소한데 반해 가계성 부채는 2.5%, 채무상환용 부채는 10.9% 감소해 비생산적 부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농가소득은 2.4% 증가하고 가계소비비는 3.2% 감소해서 농가형편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부채의 변화는 농가유형에 따라 차이가 많고 농가의 체감 지표와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경영규모별로 보면 1.0ha 미만 농가의 부채는 증가했고, 3.0ha 이상 농가의 부채는 크게 감소되었다. 경영주 연령이 30대인 농가는 부채규모가 가장 크지만 지난해에 많이 감소했으며 70대 경영주 농가의 부채는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화훼농가는 부채규모도 크고 증가속도도 빨라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인 반면 축산농가는 부채가 빠르게 감소되어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그림 1. 경영규모별 농가부채의 변화 추이



부채 분포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부채가 없는 농가의 비율은 1997년 20.4%에서 2001년 26.0%로 높아졌고,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고액부채 농가의 비율은 1997년 7.5%에서 2001년 13.2%로 증가했다.

2.2. 상환능력

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평균적으로 농가의 단기상환능력도 개선되었다. 유통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998년 73.7%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여 2002년 말에는 53.6%로 낮아졌다. 농가소득으로 가계비와 부채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단기지급능력지표(소득-가계비+감가상각-중장기부채 상환원금)도 많이 개선되었다. 단기지급능력이 부족 농가의 비율도 같은 기간에 49.9%에서 31.0%로 감소했다. 부채대책 추진과정에서 정책자금을 상환연기하지 않고 정상상환한 농가의 비율도 2001년에는 42.5%이었으나 2002년에는 78.8%로 높아졌다.

농가의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는 장기상환능력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산)은 평균적으로 12% 정도에 불과해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40%가 넘는 위험한 농가의 비율도 10.8%로 (2001년 말 기준) 결코 낮지 않다.

부채비율은 부채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부채규모가 1억원 이상인 농가 중 부채비율이 40%가 넘는 위험한 농가는 74.8%, 5천만원~1억원인 농가 중에서는 46.4%로 5천만원 이상의 고액부채농가의 장기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 가운데 단기적으로도 부채상환이 어려운 농가가 많다. 부채비율이 10% 미만인 농가 중에서는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한 농가의 비율이 74.6%이지만 부채비율이 40~70%로 증가하면 52.5%, 70% 이상으로 증가하면 34.6%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경영안정을 위한 과제이다.

표 1. 부채규모별 자산대비 부채비율

	없 음	1천만원 미만	1~3천 만원	3~5천 만원	5천~1억원	1억원 이상	합계
10%미만	100.0	88.1	34.5	7.3	2.8	0.0	59.1
10~30%	0.0	11.2	53.8	58.8	29.5	10.7	24.7
30~40%	0.0	0.6	6.4	12.5	21.3	14.5	5.4
40~70%	0.0	0.1	3.9	18.0	31.1	39.7	7.3
70%이상	0.0	0.0	1.4	3.5	15.3	35.1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01년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 자료 분석결과

표 2. 자산대비 부채비율별 상환능력 농가비율

부채비율	가계수지적자	단기지급능력 부족	단기지급능력 양호	계
10%미만	24.4	1.1	74.6	100.0
10 ~ 30	30.6	2.9	66.5	100.0
30 ~ 40	33.3	2.4	64.2	100.0
40 ~ 70	39.4	8.1	52.5	100.0
70% 이상	46.7	18.7	34.6	100.0

주; 2001년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 자료 분석결과

3. 기존 농가부채대책의 한계

3.1. 기존의 부채대책



1980년대 중반 이후 농가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부채대책과 조세 경감 정책이 되풀이 되어 왔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만 해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부채경감대책을 확대해왔다. 이들 대책은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보다 유리한 장기 저리자금으로의 대체 등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시·군과 중앙회에 부채대책심사위원회를 두어 지원적격자를 심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자료와 시스템의 미비로 극히 일부의 부유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부채가 있는 농가는 대부분 수혜를 받았다.

표 3.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의 내용

대 책	대상 및 조건	지원규모
1. 정책자금 상환연기	01~03 상환도래분, 2년 거치 5년 상환	3.9조원
2. 상호금융 대체	농어업용 상호금융 부채, 연리 6.5%로 5년간	10조원
3.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리 6.5%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3.1조원
4. 연대보증 피해 특별자금 지원	연대보증 피해 농어가,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상환	5,500억원
5. 연체이자 감면 및 연체해소 자금 지원	경영회생이 가능한 농가	
6. 정상상환 인센티브 제공	정책금융 정상상환 농가 이자의 20% 환급	

현재는 2001년 1월부터 발효한 농어가부채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이 추진 중이며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의 저리자금 대체, 연대보증피해자금 공급 등 2002년 말까지 총 13조 9,254억원이 집행되었다. 2002년 말에는 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정책자금과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를 3%로 인하하고, 부채를 1년 이상 조기 상환할 경우에 주는 인센티브를 이자액의 30%로 인상했다. 2003년에도 상환이 도래한 농업경영개선자금 5,700억원을 제대로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으로 연장하였다(03. 5. 27).

그러나 이러한 부채대책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부채문제의 해결전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지난 해 대선기간 중에 여야 모두 획기적인 부채대책을 수립하여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새로운 부채대책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부채대책위원회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0, 15, 20년의 3 종류로 나누고 금리는 연 1.5%부터 시작해서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이자율을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인단체는 시중금리의 인하추세를 반영하여 상호금융대체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의 금리도 3%대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일률적인 대책보다는 경영회생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문제가 있는 농가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2. 기존 부채대책의 한계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지원시기, 효과,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판 받아 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한참 진행된 뒤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야 정치권이 개입해야 결정되는 간헐적이고 수동적인 대책이다. 재무구조나 소득수준, 또는 상환실적과 관계없이 기준 시점에서 부채가 있으면 대부분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고 지원효과는 약해진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사실상 금융비용을 보조하는 소득보조 정책이지만 부채를 갚지 않는 농가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농업계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더구나 정작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연체에 걸린 농가는 제외되는 불완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의 밑바닥에는 금융문제와 소득문제의 동시 해결을 노리는 의식이 깔려있다. 농가의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소득지원의 의미로 치부하면서, 이러한 소득효과로 부채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기대일 뿐이다.

부채문제가 심각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대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상환유예나 이자율 인하와 같은 부채구조조정만으로는 부채문제를 풀기 어려운 농가가 많다. 자산매각 등을 통한 원금축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과 강력한 자구의를 살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소득보조정책은 부채와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금융조건을 우대를 통한 소득보조는 효과도 낮으면서 심한 불평등과 도덕적 해이, 금융질서의 훼손을 초래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4.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4.1. 부채대책의 기본방향

부채대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에 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보조정책이 부채대책과 병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소득보조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득보조정

책이 강화되면 상환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부채대책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채대책을 금융정책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전체 농가지원 예산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소득보조와 부채대책자금으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부채대책이 소득보조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한 심각한 소득분배의 왜곡과 함께 금융질서를 해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부채대책은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가 발생하면 신속히 개입하여 부실규모의 확대와 부채문제의 전염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상시지원 시스템으로서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이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농협은 농가의 경영상태 파악과 경영개선계획 자문을 통해 지도금융체제를 확립하고, 지자체는 지역경제 상황 모니터링, 정보분석 전달, 자금조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농가경영안정화에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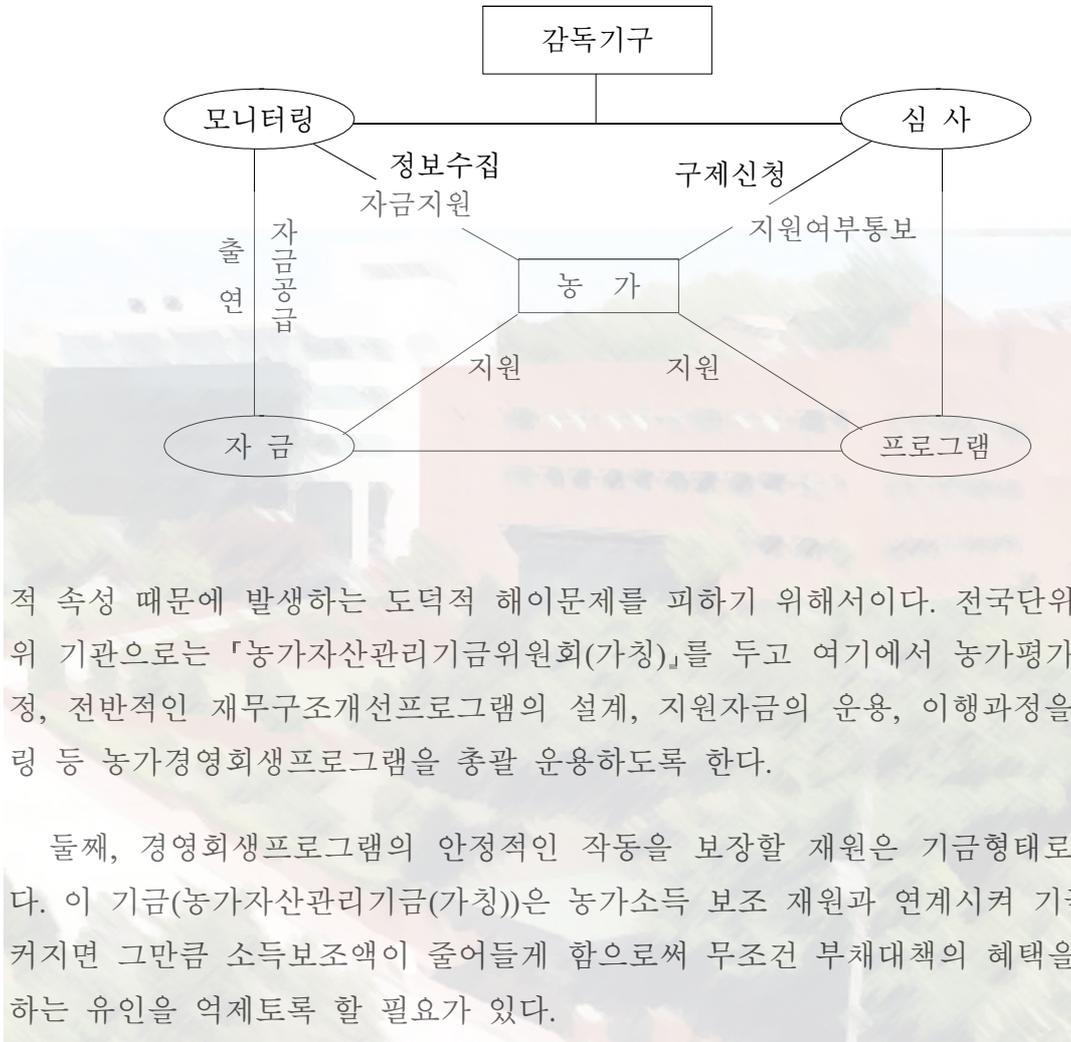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은 경영규모와 부채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전업적인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은퇴가 가까운 고령농가나 영세농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대책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또 부채규모와 경영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원금이 많은 농가는 원금을 줄이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제도는 농가의 재무구조 개선만이 아니라 농지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4.2.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의 제도화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을 상시 지원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첫째, 경영위기 농가를 심사하는 것은 권역별 「농가부채심사위원회(가칭)」가 담당하도록 한다.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이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기관이나 지도기관 등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한다. 농가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는 대출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제공한다. 권역별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관내 지역주민의 속사정까지 잘 아는 농촌의 지면사회

그림 2. 농가회생시스템의 구성 요소



적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전국단위의 최상위 기관으로는 「농가자산관리기금위원회(가칭)」를 두고 여기에서 농가평가기준 설정, 전반적인 재무구조개선프로그램의 설계, 지원자금의 운용,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등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을 총괄 운용하도록 한다.

둘째, 경영회생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재원은 기금형태로 확보한다. 이 기금(농가자산관리기금(가칭))은 농가소득 보조 재원과 연계시켜 기금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소득보조액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무조건 부채대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유인을 억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

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의 회생에는 이 모두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재정능력이 모자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금의 일부를 교부금이나 양여금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도 별도로 조성된 개발기금의 일부를 경영위기농가의 지원에 할애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실효 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농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농가의 형편에 따라 상환유예, 이자율인하, 저리자금 대체, 자산매각과 같은 자구노력 정도에 따른 원금탕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한다.

농가의 재무구조 개선은 정책적 지원과 농가의 자구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농가와 농가자산관리기금위원회간 자구노력, 경영개선 이행을 위한 이행협약(MOU)을 체결한다. 농가가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원대상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정보에서부터 개별 농가의 주요 경제지표에 이르는 세세한 자료까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체계화시켜 정보수집 비용을 줄이고 활용도는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간의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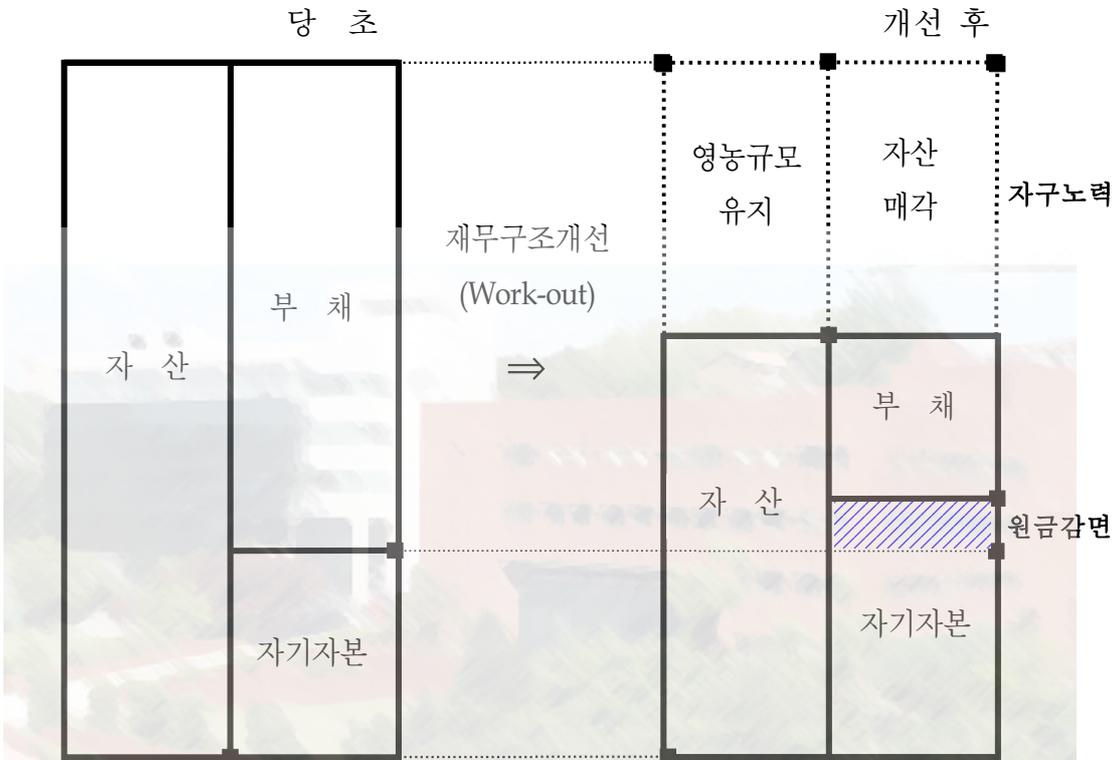
다섯째, 농가경영희생프로그램은 법률이 뒷받침해야만 한다. 현재는 연체상태인 농가를 부채대책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

4.3. 농가의 재무구조 재조정 프로그램

부채규모가 너무 크면 평균적인 농업수익률로는 정상상태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농가는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재무구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대부채-대자산형(자산은 크지만 부채도 많은) 재무구조를 소부채-소자산형(자산이 작지만 부채도 작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농가가 스스로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하면 경영희생프로그램에서는 이에 상응한 부채구조 재조정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어 스스로 부채규모를 축소해 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자구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회생이 가능하도록 원금감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재무구조 조정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금감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도 활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 재무구조 개선 개념도



4.4. 농지유동화 촉진 프로그램

농지는 거래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일시에 농지매각을 추진하면 팔리지도 않으면서 농지가격만 급락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고 농지의 유동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농가자산관리기금(가칭)」을 설치한다.



농지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경영축소와 소득기회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농지를 매각한 농가가 원한다면 그 농지를 임차할 수 있게 해주어 경영규모를 유지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농가는 농지 매각으로 소유권을 잃었지만 대신에 빚을 갚았으며, 종전과 같은 농업경영규모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종전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했으나 이제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농가자산관리기금」이 농지를 구입하려 할 경우 가격을 놓고 농가와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다. 시장가격이 낮은 경우라도 농가는 가능한 높은 가격을 원하고,

관리기금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기금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문제는 관리기금이 제시하는 표준가격과 일정기간 이내에 매각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갖게 함으로써 풀 수 있다. 표준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농지 재구입 옵션은 농지를 매각했던 농가가 원한다면 매각가격에 그 농지를 재구입할 수 있되 일정 금융비용을 부담시켜 관리기금의 운용재원으로 활용한다.

4.5. 농가 경영개선 대책

지원한 농가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만일 농가자산관리기금위원회와 맺은 경영개선 이행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상실토록 하는 등 벌칙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회수를 통해 경영개선의 자구노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경영회생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농가의 경영개선에는 유통분야의 개선이 중요하다.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실농가의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산지유통 조직에 참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지유통조직화는 높은 성과를 얻고 있지만 조직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농가의 사업 참여 기회가 애로요인이다. 부채대책을 지원받은 농가라면 어느 정도의 경영간섭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선별조직, 위탁사육 등 산지조직화에 참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방향이라면 농가에서도 이를 피할 이유가 없다.

농가가 다시 부실화되는 요인은 과도한 가계비 지출, 차입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 등이므로 이를 통제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후관리기관인 채권기관이 경영실태를 감시하고, 경영확대를 위한 자금차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농가의 농산물판매 수입은 관리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경영상태를 쉽게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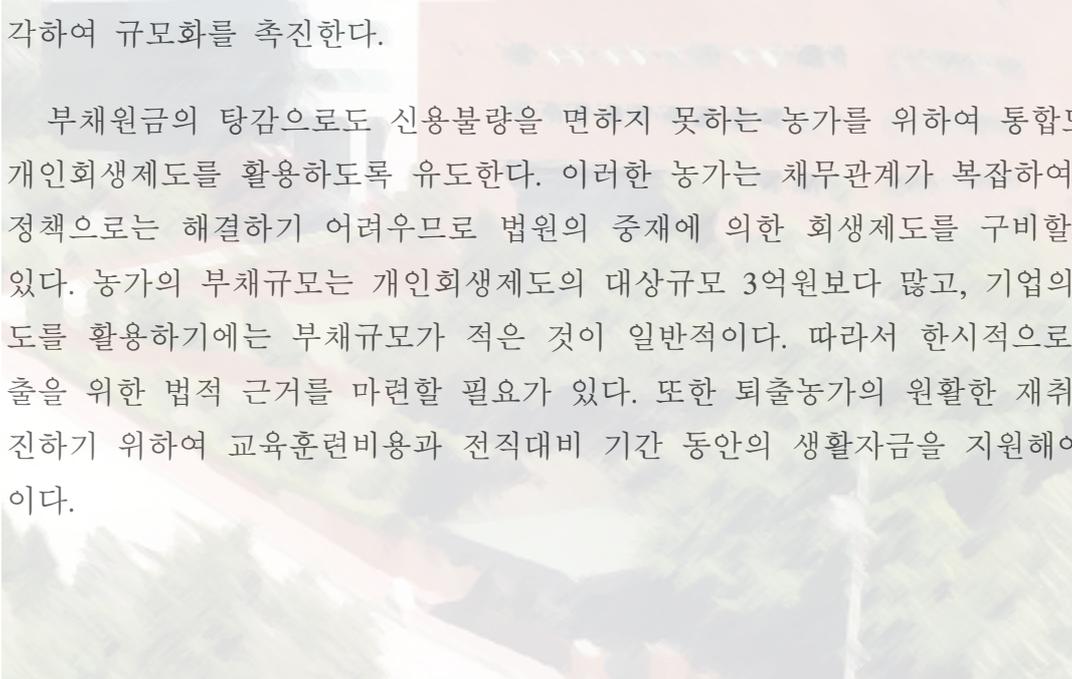
4.6. 원활한 탈농 유도 프로그램

현재의 부채대책은 경영회생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다. 상황유예나 이자율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오히려 연기된 부채가 누

적되어 부채부담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원활한 탈농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채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탈농 유도프로그램은 올바른 경영회생프로그램 실천의 바탕이 된다.

농가를 심사하여 회생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탈농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이 농업용 자산을 포기하고 탈농을 선택하는 경우에 부채원금의 일부를 탕감하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인센티브 수준은 경영이양 직불제의 지원규모에 준하는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탈농하는 농가의 농지 등의 자산은 「농가자산관리기금(가칭)」이 매입하여주고, 이는 전업농에 임대 혹은 매각하여 규모화를 촉진한다.

부채원금의 탕감으로도 신용불량을 면하지 못하는 농가를 위하여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농가는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한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중재에 의한 회생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부채규모는 개인회생제도의 대상규모 3억원보다 많고, 기업의 퇴출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부채규모가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농가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출농가의 원활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비용과 전직대비 기간 동안의 생활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MEM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 02-3299-4000

팩스 : 02-965-6950

배부문의 : 출판팀(전화 02-3299-4224)

『KREI 농정연구속보』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